

모두가 이끌린 부산의 중심에서 -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1·2순위 청약 안내

에코델타시티 PRUGIO Lynn

| 청약일정 |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발표
	1순위	2순위	인터넷 청약	2023.02.28(화)
일반공급	2023.02.21.(화) (09:00~17:30)	2023.02.22.(수)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앱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은행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대상세대(일반분양) | ※특별공급 접수 건수에 따라 일반분양 세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84A	84B	93	95T1	95T2	99	103	110T
대상세대	138	34	88	42	14	188	34	26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구분	순위별 요건				
	거주지역	청약통장	당첨사실 제한(규칙28조)	재당첨 제한(규칙54조)	주택소유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무관	무관	무관 (다주택자 청약 가능)
2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기간, 예치금액 무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선정방법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1순위 청약 시,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 보다 추천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①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순위의 경우,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전용면적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천제 (100%) 적용 ※ 1순위 청약 시,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 보다 추천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①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순위의 경우,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추천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2순위	전 주택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에·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지역·면적별 예치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